MONEYLOG BRIEFING

2026년 귀속 · 기준일 2026-10-24

13월의 월급 사수 가이드

나눔판 2/3

월세·주택·연금저축·IRP·놓치기 쉬운 공제

월세 세액공제와 주택 관련 공제, 연금저축·IRP, 부양가족·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

머니로그 브리핑
goldmoneys.com

이 책 사용법

이 소책자에서 다루는 것

이 소책자는 『13월의 월급 사수 가이드 (2026 연말정산)』 전체판에서 아래 장만 따로 나눈 나눔판 2/3입니다.

- 4장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 관련 공제
- 5장 연금저축·IRP로 세금 돌려받기
- 6장 놓치기 쉬운 공제 모음

읽기 전에

- 전체판에서 나눈 소책자라 본문의 쪽 번호는 전체판 기준입니다(전체판 8~13쪽).
- 본문에서 다른 장을 가리키는 부분은 전체판이나 다른 나눔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: 나눔판 1/3 「연말정산 구조와 카드 공제」, 나눔판 3/3 「장려금과 경정청구, 체크리스트」.
-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, 2026년 귀속(2027년 1월 정산) 기준입니다. 이후 바뀐 내용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.

> 이 자료는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와 회사 급여 담당자,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
만든 곳: 머니로그 브리핑 (goldmoneys.com) · 전체판 파일: 13월의 월급 사수 가이드_2026 연말정산.pdf
무단 전재·재배포를 금합니다.

CHAPTER 4

월세 세액공제와 주택 관련 공제

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 최대 17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환급액이 가장 큰 세액공제 가운데 하나입니다.

월세 세액공제 요건

항목	기준
대상	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(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)
소득	총급여 8,000만 원 이하
주택	전용 85㎡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(오피스텔·고시원 포함)
주소	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
한도	연 월세액 1,000만 원
공제율	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17%, 8,000만 원 이하 15%

월세 60만 원 × 12개월 — 720만 원

× 17% (총급여 4,000만 원) — **약 122만 원 환급**

2026 귀속부터 달라지는 점

- 직장 때문에 다른 시·군에 따로 사는 무주택 주말부부도 각자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한도는 부부 합산 연 1,000만 원입니다.
- 부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전용 100㎡ 이하 주택까지 대상이 됩니다.

챙겨야 할 서류: 임대차 계약서 사본, 주민등록등본,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납부 증빙. 월세는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.

함께 확인할 주택 관련 공제

공제	대상	내용
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	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	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 40% 공제 (최대 120만 원).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.
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	무주택 세대주, 전세자금 대출 상환자	상환액의 40% 공제. 청약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 한도입니다.
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	구입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자 (1주택 세대주)	상환 기간·방식에 따라 연 600만 ~2,000만 원까지 이자 공제

CHAPTER 5

연금저축·IRP로 세금 돌려받기

연금저축과 IRP에 연 9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148.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. 12월에도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.

148.5만
총급여 5,500만 이하
세액공제율 16.5%

118.8만
총급여 5,500만 초과
세액공제율 13.2%

900만 원을 모두 납입했을 때의 환급액(지방소득세 포함)

한도 구조

- 연금저축만: 연 600만 원까지 공제
- 연금저축 + IRP: 합산 연 900만 원까지 공제
- IRP만 따로도 900만 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.
- 회사가 넣어 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 내가 직접 추가 납입한 금액만 해당합니다.

12월 납입 전 체크리스트

- [] 금융사 앱에서 올해 누적 납입액 확인
- [] 부족분을 12월 중순까지 납입(금융사별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음)
- []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무리하지 않기: 만 55세 전에 중도 인출하면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 16.5%가 붙습니다.
- []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까운지 미리보기로 확인: 낼 세금이 없으면 세액공제도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.

CHAPTER 6

놓치기 쉬운 공제 모음

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뜨지 않거나 요건을 잘못 알아 빠뜨리는 공제들입니다. 해당되는 항목만 체크하세요.

부양가족 공제

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 150만 원입니다. 연소득 100만 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)이고,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,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.

- [] 따로 사는 부모님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
- []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은 경로우대 100만 원 추가
- [] 장애인(암 등 중증환자 포함, 의사 소견서 필요)은 200만 원 추가, 나이 제한 없음
- [] 자녀세액공제: 2026년 귀속은 만 9세 이상 자녀 대상. 첫째 25만, 둘째 30만, 셋째 이상 1명당 40만 원
- [] 2026년 출산·입양: 첫째 30만, 둘째 50만, 셋째 이상 70만 원 세액공제

의료비 세액공제

총급여의 3%를 넘긴 의료비의 15%를 공제합니다. 난임시술비는 30%, 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%입니다.

- [] 본인·만 65세 이상·만 6세 이하·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음(그 외 가족은 연 700만 원)
- []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나이·소득 요건이 없어도 공제 가능
- [] 안경·콘택트렌즈 구입비(1명당 연 50만 원)는 간소화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안경점 영수증 챙기기
- []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

- [] 실손보험금을 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빼야 함(간소화 자료에 표시됨)

교육비 세액공제 (15%)

- [] 2026 신규 만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1~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·체육시설 이용료(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, 2026년 1월 이후 지출분)
- [] 2026 신규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도 등록금 공제 가능(소득요건 폐지, 1명당 연 900만 원)
- []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·유치원·학원비(1명당 연 300만 원)
- []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·직업능력개발훈련비는 한도 없음
- [] 교복·체육복 구입비(중·고교생 1명당 연 50만 원)는 구입 영수증 챙기기

기부금 세액공제

기부금은 1,000만 원 이하 15%, 초과분 30% 공제입니다. 고향사랑기부금은 2026년 귀속부터 공제율이 올랐습니다.

고향사랑기부 금액 구간	공제율
10만 원까지	전액 공제
10만 원 초과~20만 원 2026 변경	40% (기존 15%)
20만 원 초과	15%

20만 원 기부하면

14만 원을 돌려받고, 답례품(기부액의 30% 이내)도 받을 수 있습니다.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올해 공제됩니다.

그 밖의 항목

- [] **결혼세액공제:** 2024~2026년에 혼인신고한 경우 1인당 50만 원(생애 1회). 2026년이 마지막 해입니다.

- [] **보육수당 비과세:** 2026년부터 만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(기존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).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.
- [] **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:** 만 15~34세 청년은 취업 후 5년간 소득세 90% 감면(연 200만 원 한도). 회사에 신청서를 내야 적용됩니다.
- [] **보장성보험료:** 연 100만 원 한도 12% 세액공제(장애인 전용보험 15%)

MONEYLOG BRIEFING

받을 수 있는 돈,
놓치지 마세요

머니로그 브리핑은 직장인과 사회초년생이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돈 정보를 정리합니다.

정부 지원금·숨은 환급금

청약·내집 마련·전세 안전 체크

연말정산·절세·연금

goldmoneys.com

기준일 2026년 10월 24일. 이 자료는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 무단 전재·재배포를 금합니다.